

양 도 각 서

1. 본인은 별첨사업의 시행자(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본인의 모든 권리를 귀사에 양도함을 확인합니다.
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귀사와 체결하는 사업약정에 따라 사업시행권 양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부도·파산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주택건설관련법령, 건축법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귀사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귀사(귀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보증책임을 부담하게되는 경우
2. 또한, 귀사가 동 사업의 사업주체(건축주를 포함한다)를 귀사로 명의변경하거나 별첨 주택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의 동의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본인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이 귀사에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과 승낙 의뢰 및 승낙 통지 수령 권한을 귀사에 위임합니다.
4.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필요한 일체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부지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매매대금반환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텔하우스, 공사관리소등 지상·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등 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 라. 사업주체와 귀사 간의 약정에서 정한 결제관리계좌에 관한 일체의 권리
- 마. 부가가치세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경정청구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취소신청을 “대리”할 권한을 포함한다)
- 바. 사업권, 시공권,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 등 기타 별첨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 별첨 1.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양도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인감대조필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